

작성요령

1. "사업명(사업장명)"란에는 「사업자등록증」의 상호명을 적습니다.
2. "대표자 성명"란에는 「사업자등록증」의 대표명을 적습니다.
3. "업종(주산품)"란에는 「사업자등록증」의 업종·업태를 적습니다.
4. "상시 근로자 수"란에는 '(연 근무인원) ÷ (연 사업장 가동 일수)'를 적습니다.
5. "노동조합원 수"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를 적고, 없는 경우 '0'으로 적습니다.
6. "주소"란에는 「사업자등록증」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.
7. "평균 재직기간"란에는 '(전체 근로자의 근로기간 합계) ÷ (전체 근로자 수)'를 적습니다.
8. "임금 체계"란에는 사업(사업장)의 주된 임금 체계(호봉제/연봉제/직무급제/기타)를 적습니다.
※ 직무급제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등급을 도출하고 직무등급에 기초하여 기본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
9. "종전 퇴직금제"란에는 종전에 적용되었던 퇴직금제의 형태(단수제/누진제/기타)를 적습니다.
10. "종전 퇴직금 처리"란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지 또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는지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11. "퇴직연금 소급기간"란의 작성은 다음에 따릅니다.
 - 1)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급하는 경우에 작성
 - 2) 소급기간이 개인별로 다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급기간[(직원별 소급기간 합산) ÷ (전체 직원 수)]을 적음
12. "퇴직급여제도 형태"란에는 신고(신규/변경) 후 해당 사업(사업장)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 합니다.
※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한 경우를 말하며, 사용자가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